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과 (사)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 협회(이하 “확인단체” 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하 “종사경력” 이라 한다) 확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의 종사경력 확인업무에 대한 협력을 통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협력)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종사경력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2. 신청인에 대한 종사경력 확인 요청 및 확인업무 수행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확인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 없는 공익위원을 5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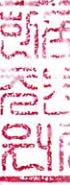
③ 제2항의 공익위원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 변호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익위원이 아닌 위원은 단체의 회원 중 종사경력 4년 이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진흥원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종사경력 확인을 의결한다.

제5조(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① 진흥원은 원활한 종사경력 확인업



무 수행을 위하여 확인단체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다.

② 확인단체는 제1항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종사경력 확인 요청)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인에게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할 확인단체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② 진흥원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단체에게 신청인의 종사경력 확인을 요청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제7조(종사경력 확인업무 수행) ① 확인단체는 진흥원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확인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③ 확인단체는 진흥원이 정한 기간 내에 확인업무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1. 종사경력 확인서

2. 위원회의 회의록

3. 신청인이 진흥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로서 종사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확인단체는 신청인의 종사경력 증빙서류의 사본을 따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확인단체는 신청인이 납입하는 확인 실비를 제외하고, 종사경력 확인에 대한 유·무형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종사경력 확인 재요청) 진흥원은 종사경력 확인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확인단체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종사경력 확인을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단체의 종사경력 확인업무는 제7조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 조성)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 기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본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1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진흥원과 확인단체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07.31.까지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단체 지정 고시가 취소될 경우 그 날로부터 이 협약은 실효된다.

제12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확인단체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8월 21일

한 국 콘 텐 츠 진 흥 원

(사)한국광고모델에이전시협회

원 장 김 영 준

회 장 황 혜 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확인단체”라 한다)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하 “종사경력”이라 한다) 확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종사경력 확인업무에 대한 협력을 통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협력)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종사경력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2. 신청인에 대한 종사경력 확인 요청 및 확인업무 수행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확인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 없는 공익위원을 5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익위원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 변호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익위원이 아닌 위원은 단체의 회원 중 종사경력 4년 이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진흥원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종사경력 확인을 의결한다.

제5조(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① 진흥원은 원활한 종사경력 확인업

무 수행을 위하여 확인단체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다.

② 확인단체는 제1항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종사경력 확인 요청)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인에게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할 확인단체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② 진흥원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단체에게 신청인의 종사경력 확인을 요청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제7조(종사경력 확인업무 수행) ① 확인단체는 진흥원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확인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③ 확인단체는 진흥원이 정한 기간 내에 확인업무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1. 종사경력 확인서

2. 위원회의 회의록

3. 신청인이 진흥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로서 종사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확인단체는 신청인의 종사경력 증빙서류의 사본을 따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확인단체는 신청인이 납입하는 확인 실비를 제외하고, 종사경력 확인에 대한 유·무형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종사경력 확인 재요청) 진흥원은 종사경력 확인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확인단체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종사경력 확인을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단체의 종사경력 확인업무는 제7조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 조성)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 기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본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1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진흥원과 확인단체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07.31.까지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단체 지정 고시가 취소될 경우 그 날로부터 이 협약은 실효된다.

제12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확인단체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그부씩 보관한다.

2018년 8월 21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한국매니지먼트연합

원장 김 영 준

회장 신 주 학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과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확인단체” 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하 “종사경력” 이라 한다) 확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의 종사경력 확인업무에 대한 협력을 통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협력)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종사경력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2. 신청인에 대한 종사경력 확인 요청 및 확인업무 수행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확인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 없는 공익위원을 5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익위원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 변호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익위원이 아닌 위원은 단체의 회원 중 종사경력 4년 이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진흥원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종사경력 확인을 의결한다.

제5조(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① 진흥원은 원활한 종사경력 확인업

무 수행을 위하여 확인단체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다.

② 확인단체는 제1항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종사경력 확인 요청)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인에게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할 확인단체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② 진흥원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단체에게 신청인의 종사경력 확인을 요청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제7조(종사경력 확인업무 수행) ① 확인단체는 진흥원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안전으로 하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확인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③ 확인단체는 진흥원이 정한 기간 내에 확인업무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1. 종사경력 확인서

2. 위원회의 회의록

3. 신청인이 진흥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로서 종사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확인단체는 신청인의 종사경력 증빙서류의 사본을 따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확인단체는 신청인이 납입하는 확인 실비를 제외하고, 종사경력 확인에 대한 유·무형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종사경력 확인 재요청) 진흥원은 종사경력 확인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확인단체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종사경력 확인을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단체의 종사경력 확인업무는 제7조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 조성)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 기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본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1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진흥원과 확인단체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07.31.까지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단체 지정 고시가 취소될 경우 그 날로부터 이 협약은 실효된다.

제12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확인단체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8월 21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원장 김 영 준

회장 손 성 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과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확인단체” 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하 “종사경력” 이라 한다) 확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의 종사경력 확인업무에 대한 협력을 통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협력)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종사경력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2. 신청인에 대한 종사경력 확인 요청 및 확인업무 수행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확인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 없는 공익위원을 5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익위원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 변호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익위원이 아닌 위원은 단체의 회원 중 종사경력 4년 이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진흥원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종사경력 확인을 의결한다.

제5조(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① 진흥원은 원활한 종사경력 확인업

무 수행을 위하여 확인단체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다.

② 확인단체는 제1항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종사경력 확인 요청)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인에게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할 확인단체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② 진흥원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단체에게 신청인의 종사경력 확인을 요청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제7조(종사경력 확인업무 수행) ① 확인단체는 진흥원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확인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③ 확인단체는 진흥원이 정한 기간 내에 확인업무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1. 종사경력 확인서

2. 위원회의 회의록

3. 신청인이 진흥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로서 종사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확인단체는 신청인의 종사경력 증빙서류의 사본을 따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확인단체는 신청인이 납입하는 확인 실비를 제외하고, 종사경력 확인에 대한 유·무형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종사경력 확인 재요청) 진흥원은 종사경력 확인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확인단체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종사경력 확인을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단체의 종사경력 확인업무는 제7조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 조성)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 기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본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1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진흥원과 확인단체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07.31.까지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단체 지정 고시가 취소될 경우 그 날로부터 이 협약은 실효된다.

제12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확인단체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8월 21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원장 김 영 준

회장 김 영 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과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확인단체” 라 한다)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하 “종사경력” 이라 한다) 확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의 종사경력 확인업무에 대한 협력을 통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협력)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종사경력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2. 신청인에 대한 종사경력 확인 요청 및 확인업무 수행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확인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 없는 공익위원을 5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익위원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 변호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익위원이 아닌 위원은 단체의 회원 중 종사경력 4년 이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진흥원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종사경력 확인을 의결한다.

제5조(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① 진흥원은 원활한 종사경력 확인업



무 수행을 위하여 확인단체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다.

② 확인단체는 제1항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종사경력 확인 요청) ① 진흥원은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신청인에게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할 확인단체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② 진흥원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확인단체에게 신청인의 종사경력 확인을 요청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제7조(종사경력 확인업무 수행) ① 확인단체는 진흥원의 종사경력 확인 요청에 따라 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확인단체는 종사경력 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회원과 비회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③ 확인단체는 진흥원이 정한 기간 내에 확인업무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1. 종사경력 확인서

2. 위원회의 회의록

3. 신청인이 진흥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로서 종사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확인단체는 신청인의 종사경력 증빙서류의 사본을 따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확인단체는 신청인이 납입하는 확인 실비를 제외하고, 종사경력 확인에 대한 유·무형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종사경력 확인 재요청) 진흥원은 종사경력 확인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확인단체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종사경력 확인을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단체의 종사경력 확인업무는 제7조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제9조(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 조성)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교육, 기타 대중문화예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본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11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진흥원과 확인단체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07.31.까지이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단체 지정 고시가 취소될 경우 그 날로부터 이 협약은 실효된다.

제12조(기타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확인단체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진흥원과 확인단체는 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8월 21일

한 국 콘 텐 츠 진 흥 원

(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원 장 김 영 준

회 장 김 병 찬

